

학생활동에 관한 규정

제정 1986.12. 3 개정 1999. 3. 4
개정 1989. 5.29 개정 2026. 3. 1
개정 1991. 4. 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72조에 의거하여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목표) 본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활동의 목표는 학구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양증진과 정서함양을 통하여 훌륭한 과학도로서의 성장을 기함에 있다.

제 2 장 학 생 단 체

제3조(단체의 정의 및 구분) ① 학생단체라 함은 본 대학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학생들의 모임을 총칭한다.

② 학생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등록요건) 모든 학생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학칙 및 학생회칙에 부합하는 내용의 학생활동을 추구하는 단체이어야 한다.
2. 동아리의 경우 1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동아리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.

제5조(등록절차)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생단체 등록원
2. 지도교수 지도승낙서
3. 회원명단 및 서약서
4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

5. 단체의 조직도

6. 전년도 활동실적 및 결산보고서

7. 금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서

제6조(승인) 제5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한 학생단체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이 승인,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.

제7조(지도교수) ① 각 학생단체의 지도교수는 해당 단체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가 장기간의 해외출장이나 기타 사유로 학생단체를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른 교수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활동기간) 승인된 학생단체의 활동기간은 매학년도 말까지로 하며,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변경신고) 학생단체의 회칙, 조직 및 기타 중요사항에 변동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활동제한 및 금지) 학생단체의 활동이 본 대학 학칙 및 본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학생단체의 해산
2. 일정기간의 활동정지
3. 기타교육상 필요한 조치

제 3 장 교 내 집 회

제11조(정의) 교내집회라 함은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없이 본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.

제12조(집회신청) 교내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3일전까지 학생활동계획서(별지 서식 1)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동일계획서 1부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3조(집회공고) 집회공고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교 외 집 회

제14조(정의) 교외집회라 함은 본 대학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모든 집회를 총칭한다.

제15조(집회신청) ① 교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7일전까지 학생단체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활동계획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,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외집회 신청을 할 때에는 학생활동계획서에 집회관련 제반자료(각종 홍보물의 원안등)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집회공고) 교외집회공고는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5 장 계 시 물

제17조(게시물의 정의) 게시물은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본 대학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교내 게시물과 외부인이 본 대학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교외게시물로 구분한다. 단,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외에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게시물은 교외게시물로 간주한다.

제18조(게시요령) 학생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게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자의 신분(단체명, 학과, 성명 등)을 분명히 밝히고 게시용지 하단에 게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(게시장소) 게시는 지정된 게시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며, 유리창 또는 건물 내외의 벽면, 바닥등 지정된 게시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.

제20조(게시기간) 행사 홍보 게시물은 행사 당일까지, 그외 게시물은 게시일로부터 5일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은 게시자가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.

제21조(교외 게시물의 게시) 외부 게시물을 학내에 게시하거나 본 대학 및 학생단체가 제작한 게시물을 외부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 7일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활동계획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인 쇄 물

제22조(인쇄물의 정의) 인쇄물은 배포할 목적으로 인쇄, 타이핑, 복사한 일체의 문서를 총칭하며,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내에 배포하기 위한 교내인쇄물과 교외에서 제작되거나 교외에 배포하기 위한 교외인쇄물로 구분한다.

제23조(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) 학생 및 학생단체가 제22조의 목적으로 교외인쇄물을 제작 혹은 배포하고자 할 때는 배포 7일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활동계획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(별지 서식 1) 학생활동계획서

학생활동계획서

I. 행사주관 (1) _____ (학과, 동아리)
(2) 행사명 _____

II. 행사종류 (해당사항에 ○표 하시오)

- (1) 교내집회 (2) 교외집회
(3) 교외제작게시물 교내부착 (4) 교내·외 제작 게시물 교외부착
(5) 교외인쇄물 교내배포 (6) 교내·외 인쇄물 교외배포
(7) 기타 :

《작 성 요 령》

I. (1)은 행사주관 학과나 동아리명을 (2)는 행사주관 단체의 종류(M.T, 체육대회, 수련회, 단합대회, 기타)를 기재할 것.
II. (1)은 학과장(지도교수) 전결로 처리하되, 행사 3일전까지 사본 1부를 학생처로 제출 하고, (2)~(6)은 해당단체 학과장(지도교수)의 추천을 받아 행사 7일전까지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(7)은 행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학생처의 안내 를 받기 바랍니다.

III. 행사시간: 20 년 월 일(요일) 시 분 ~ 월 일(요일) 시 분

IV. 행사목적 :

V. 행사장소(구체적으로 기입 단, 교외장소인 경우 약도 첨부할 것)

VI. 참가예정인원 : 교수 명, 학생 명, 기타 명, 전체 명

VII. 학교차량 이용여부(이용함, 이용하지 않음)

이용시 배차신청서 1부.(소정양식 학생지원팀 비치) 제출

VIII. 행사내용(구체적으로 기입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첨부, 부족시 별도용지 이용)

IX. 기타 협조요망사항

(별지 서식 2)

행 사 승 인 서

I. 행사주관 (1) _____ (학과, 동아리)
(2) 행사명 _____

II. 행사종류 (해당사항에 ○표 하시오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교내집회 | (2) 교외집회 |
| (3) 교외제작게시물 교내부착 | (4) 교내·외 제작 게시물 교외부착 |
| (5) 교외인쇄물 교내배포 | (6) 교내·외 인쇄물 교외배포 |
| (7) 기타 : | |

III. 행사기간 : 20 년 월 일(요일) 시 분 ~ 월 일(요일) 시 분

IV. 행사목적 :

V. 행사장소 :

VI. 학교차량 이용 (편도, 왕복)

상기단체 (학과, 동아리) 행사를 승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장(T.)	인
지도교수(T.)	인
학생처장(T.)	인